

「장애인일자리지원(복지일자리)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)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장애인일자리지원(복지일자리)
- 추진근거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
 -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위탁사무
 -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, 관리
 - 참여자 복지일자리 제공(사무업무, 청소, 급식지원 등 42종)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* 2024. 1. ~ 2026. 12.
- 소요예산: 803백만원(국 50%, 도 15%, 시 35%)
 - ※ 2024 ~ 2026 예산(국·도비 매칭) 및 지침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○ 신청자격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사업유형		사업수행기관
복지일자리	참여형	사회복지시설*(장애인복지관 등) 및 비영리민간단체*(장애인단체 등)
	특수교육- 복지연계형	사회복지시설(장애인복지관 등) 및 특수교육관련기관*(특수학교 등)

* 사회복지시설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·운영되는 이용·생활시설

* 비영리민간단체: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

* 특수교육관련기관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한 특수교육기관
(특수학교, 특수학급, 전공과), 같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·
운영되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

○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사

• 심사기준: ‘23년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(표준) 선정심사기준에 의함

• 선정방법

- 신청기관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거,
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(서면 심의 가능)

※ 선정위원회 : 장애분야 전문가,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·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,
시 복지업무 담당 중 적격자 4명으로 구성

- 사업수행능력, 유사사업 추진경험, 배치기관 개발능력, 담당인력
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합계 평균 70점 이하 선정 제외

- 위원별 배점 결과 항목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
합산, 단,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

• 선정심사표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서식(보건복지부)

no-		신청 기관명			
심 사 기 준		세 부 항 목		배 점	득점
합 계				100	
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(60 점)	기관의 목적(주된 기능)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		2~10		
	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(15)	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	0~5		
		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	0~5		
		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	0~5		
	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(15)	직업상담만 실시	5		
		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	10		
		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 응훈련 모두 실시	15		
	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(10)	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(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)	전부10,일부5		
		그 외 인력	0		
	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			5	
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(2개 유형 이상)			5		
사업계획의 적절성 (40 점)	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			2~10	
	사업 계획의 적절성			2~10	
	직무 개발 노력 여부	환경정리,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, 디앤디케어,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	5		
		환경정리,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, 디앤디케어,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	10		
	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			2~10	

4. 참고사항

-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(복지일자리) 위탁 현황
- 관계법령
- 위탁비용 추계서

< 장애인일자리사업(복지일자리) 위탁 현황 >

◆ 위탁 현황(2023년 기준)

기관명	기관유형	소재지	위탁금	배정인원
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	장애인복지관	구미시 공원로 340	168,723	25
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	장애인체육관	구미시공원로 340	175,472	26
구미종합사회복지관	사회복지관	구미시 검성로 103-2	101,234	15
금오종합사회복지관	사회복지관	구미시 문장로 110	121,480	18
(사)경북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회	장애인단체	구미시 봉곡로14길 23-7	128,229	19
구미혜당학교	특수교육기관	구미시 선산대로 129-1	107,983	16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‘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’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, 위탁업무 지도 및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

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- 또한,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